

인천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나5997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# 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나59970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8. 5. 18 선고 2017가단33352 판결

### 전문

원고,피항소인 A

피고,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8. 10. 24

판결선 고 2018. 11. 21

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. 5. 18. 선고 2017가단33352 판결

#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대 1447.3㎡ 지상 8층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6.2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 판단

피고는,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부합되지않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5, 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①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외부와 독립적으로 연결된 입구나 계단이 없고,이 사건 집합건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점(지상에서 이사건 위반건축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8층까지 올라간 다음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 이 사건 위반건축물과 연결된 문으로 나가야 한다), ②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이 사건 집합건물과 함께 설계·건축된 것이 아니고,이 사건 집합건물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당초 외부 테라스로설계된 부분에 증축된 것인 점, ③ 결국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될운명의 것이어서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, 따라서 독립적인 소유권의객체가 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결국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이 사건 집합건물에 부합된 것으로

봄이 타당하다,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   이주영판사    심승우판사    이민호

별지